

#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

장애인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을 전담할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공고는 2026년 창업 컨설팅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수행기관** 모집공고문이며, **대상자 모집은 추후(2~3월)에 별도 공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관은 권역별로 신청해야 하며, **복수신청 및 선정이 불가합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지원

창업단계	정의
예비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자
초기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선정규모** : 총 2개 기관

권역	수도권역·중부권역	남부권역·서부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기관 수(개사)	1	1

\* 기관별 복수권역 신청 및 선정 불가, 1개 기관당 **1개 권역** 선택하여 신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 **지원내용** :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1개 권역 당 150백만원, 당해연도 총 사업비 300백만원

권역	수도권역·중부권역	남부권역·서부권역	총계
예산(백만원)	150	150	300

## 2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창업 컨설팅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수행기관으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구분	내용
필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자체 사무실 보유(자가 소유 또는 임차)</li> <li>▪ 창업 전문가(컨설턴트), 대상자 모집역량,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각종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li> <li>▪ 본 교육을 위한 창업 컨설팅 담당자*를 1인 이상 보유(대표자 제외)                      * 수행기관 소속으로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단, 신규 채용일 경우 과업 수행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유지할 것</li> </ul>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보유</li> <li>▪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창업·취업 전문기관 등</li> <li>▪ 창업 분야 국고 사업 회계 정산 실적 등 이와 동등한 실적 보유</li> </ul>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능 수행기관으로 본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본 사업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 (민간단체)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기타 법인형 엔젤투자자, 협회·단체 등
- (기타) 위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중 본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제외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요건(1~5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추후 해당됨이 확인될 경우 평가 및 최종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번호	요건	세부내용
1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3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4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기관)로 규제중인 경우
5	참여제한	○ 중소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기업부(산하기관 포함) 및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로부터 계약해지, 지원중단 등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미달인 경우

### 3 수행기관 의무 및 역할

□ **주요역할**



\* 2026년 기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 (계약 이후 제공)

### ① 컨설턴트 교육

- (의무교육) 센터 소속 전문위원 및 기관 소속 컨설턴트 대상 의무 교육(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수료증 일괄 취합·제출
- \*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활용, 법정 의무교육 총 5차시 구성(2시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운고침 플러스+"
- (사업교육) 사업 추진일정, 목표 수료생 및 창업자, 컨설팅 일지 작성 매뉴얼, 컨설팅 분야별 필수 이행항목 등 전반적인 안내

### ② 대상자 접수

- (사전진단) 온라인 교육지원 시스템(창업-NET)을 통한 대상자 사전 진단 결과 확인 및 신청자 DB 구축 실시
- (신청접수) 일별 신청자 명단을 센터 담당자가 기관 담당자에게 공유 예정, 접수된 대상자 권역별 추출하여 관리

### ③ 컨설턴트-대상자 1:1 매칭

- (1:1매칭) 대상자 사전진단 결과에 따른 적합한 컨설턴트를 매칭 하여 향후 컨설팅 계획 수립(방향·횟수, 주요내용 및 목표 등 설정)
- \* 단, 컨설팅 1회당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일 최대 2회 실시 가능함(지침 참고)
- (센터 전문위원) 센터가 위촉한 창업전문위원(203명) 및 현장소통 위원(31명)으로 구성, 향후 협약 시 명단 제공(변동 가능성 있음)
- (기관 컨설턴트) 수행기관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 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서 내 컨설턴트만 활용 가능
- (활용비율) 컨설팅 시 **40:60 비율**로 센터 창업전문위원과 기관 소속의 컨설턴트를 활용해야 하며, 월별보고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예정
- (활용횟수) 센터 창업전문위원 및 기관 소속 컨설턴트 모두 1인당 **총 컨설팅 횟수는 40회**로 제한하며, 대상자 요청 시 즉각 교체해야함

**④ 컨설팅 수행**

- (맞춤 컨설팅) 대상자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며, 대상자 1인당 컨설팅 횟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 가능

창업단계	컨설팅 분야
예비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AI 활용, 자금조달 및 지원 안내 등
재기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AI 활용, 판로개척, 채무, 변리, 신용 등
초기	마케팅, 세무, 법률, 특허, AI 활용, 기술(디지털전환, 서비스, R&D) 등

- (컨설팅 일지) 컨설팅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완료보고서 등은 지침 내 양식을 활용하며, 그 외 양식을 활용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월별/중간보고**

- (월별보고) 매월 말 컨설팅 대상자(신청, 수료, 포기) 및 컨설턴트 매칭 현황 등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보고, 상시 모니터링 협조
- (중간보고) 중간점검 이전 보고서, 사업비 집행 현황 등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를 사전 구비하여 점검 이후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수정

**⑥ 컨설팅 성과관리**

- (성과관리) 컨설팅 수료생 센터 지원사업 연계(신청, 선정, 포기, 탈락) 현황 파악을 통한 목표수료생 및 창업자 실적관리 실시
- (지원연계) 컨설팅 수료생 대상 센터 창업지원사업 외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연계, 기관명 및 지원내용 DB 구축 실시

**⑦ 최종성과보고**

- (만족도조사) 컨설팅 수료생 만족도조사 실시(필요시 유선, 이메일, 문자, 구글폼 등 활용 가능) 후 산출된 통계 결과 및 기타의견 보고
- (최종성과보고) 외부 회계감사 및 최종회계점검(e-나라도움 상시점검 등) 이후, 최종성과보고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대상자 DB 등 보고

### ⑧ 사업비 정산마감 및 기타사항

- (정산마감) 최종회계점검·e-나라도움 점검 결과 이상 없을 경우, 집행 정산 마감 및 정산보고서 작성 후 이자·수익금 반납
  - \* 외부 회계감사 비용처리까지 완료 후 집행정산 마감 및 보고서 작성 필요
- (기타사항) 대상자 및 컨설턴트 상시 모니터링,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진행, 민원 대응, 간담회 참석 등

## 4 사업비 안내

□ **사업비 규모** : 1개 권역 당 150백만원, 당해연도 총 사업비 300백만원

권역	수도권역·중부권역	남부권역·서부권역	총계
예산(백만원)	150	150	300
수료인원(명)	180	180	360

\* 수료인원 달성 후, 예산 소진 및 목표 창업자 양성 시까지 컨설팅 지속 진행 必

### □ 사업비 계상 및 편성기준

- (직접비) 컨설턴트 인건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광고료로 구성, 총 사업비의 70% 이상 편성
- (간접비) 행정인력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예비비 5%, 일반관리비 10% 포함)
  - \* (예비비) 총 사업비의 5% 이내,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 \*\* (부가세) 본 사업비 내 편성 및 집행 불가, 자부담으로 진행
- (편성기준) 아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비는 협의 없이 임의 집행 불가하며, 예산변경을 희망할 경우 센터와 사전 조율 必
  - \* (예산변경) 지침 내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를 활용하며,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공고 제26-2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편성기준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 수당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이 가능한 기관 재직자 중 행정 전담인력(무기계약직 포함)	간접비
	기타직보수	계약직원 수당	컨설팅 행정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계약직원 인력	
	기타인건비	컨설턴트 수당	1회 2시간 이상, 일지 작성시간 포함 최대 200천원, 일 최대 400천원	직접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간접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안내,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리플렛, 배너 등 홍보물품 제작비	직접비
		소모품 구입비	컨설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간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회계검사 수수료	
		공고료 및 광고료	TV, SNS,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직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우편(택배)요금, 문자 및 전화요금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컨설팅 진행을 위한 공용오피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리스료	노트북, 복합기 등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컨설팅 진행을 위한 렌터카 등		
여비	국내여비	KTX 일반	편도 70km 이상, 실비지급	간접비
		고속버스 우등		
		제주지역 항공기 일반		
		자가	오피넷 상 오늘의 유가 기준(실비X)	
업무 추진비	기관업무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록 및 회의사진과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된 명부 첨부(유형비, 주류X)	
반환금 등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총 사업비의 5% 이내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5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6. 1. 30.(금) 16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angup@debc.or.kr)

\* 원본 서류는 추후 선정기관에 한하여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접수처)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창업지원부 창업 컨설팅 담당자 앞

□ **신청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조, 비고 붙임양식 미활용 시 탈락 처리

번호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계획서	1부	붙임2
3	서약서	1부	붙임3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4
5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
7	실적증명서(계약서, 협약서 등)	각 1부	-
8	행정인력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
9	컨설턴트 이력사항(이력서, 재직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각 1부	-
10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1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해당 시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必

\*\* 제출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 (제출파일 제목)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 신청(위 표에 기재된 번호순)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
- 신청서류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허위사실, 문서조작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탈락 처리됨
- 신청서류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침 내 제재조치(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가 불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의 조치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평가 · 선정

□ **진행절차** : 아래 절차는 센터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평가위원)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전문가 등 5명 이내 위원 위촉
- (서류심사)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및 신청 제외기관 여부 평가
- \* 서류심사를 통해 권역별 최종 선정기관(1개사)의 **2배수(2개사) 이내**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40)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점
	컨설팅 운영 인력(기관 행정인력, 기관 내부 컨설턴트)	20점
정성(60)	추진목표와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대상자 확보를 사업홍보계획의 전문성 및 특장점	10점
	컨설팅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의 현실성	10점
	추가 제안사항의 매력도	10점
	사업비 집행계획과 반부패행위 등 청렴성	10점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심사 유의사항

- 평가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시간을 숙지하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한 경우 **탈락처리**
- 발표는 ppt슬라이드 총 10장 내외, **시간 10분 내외**로 준비(**질의응답 포함 총 20분**)
- 질의응답은 발표시간 제외 10분 내외로 진행하며 **발표자 외 1인**까지 참여 가능
- 발표자는 **기관장** 또는 **창업 컨설팅을 총괄하는 실무자**(50% 이상 참여)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함(평가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최종선정) 모집 규모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

$$\text{평가점수}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심사위원 1인 이상 불참 시 평가점수는 참석한 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본 사업에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7 유의사항

-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센터 주관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으로 중복 선정 불가
-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 정산 → 이자 및 수익금반납 → 정보공시 등 일체의무 이행 필수
- 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보험료는 기관이 별도 부담
  -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며, 신청기관 미확인·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기관에 책임이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 마감일자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
  - 신청 및 선정기관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단독 사업체가 아닌 본사(점)와 지사(점)가 존재하는 경우, 본사와 지사 중 1개의 사업체만이 사업체 전체를 대표하여 지원 가능
  - 선정된 기관은 센터의 개인정보 등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8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debc.or.kr](http://www.debc.or.kr)
- 유선 문의 : 창업지원부 ☎ 02-2181-6526, 6522 / E: [changup@debc.or.kr](mailto:changup@debc.or.kr)

9

**붙임서류**

1.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1부
2.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